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 2012년 2월에 오사카시 인정 사무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 오사카시 인정 사무센터에서는 창구에 오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신청서류나 수속 등에 관해서는 오사카시 인정 사무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TEL 06-4392-1700)

1 신청합니다

오사카시 인정 사무센터에서 '요개호 인정 · 요지원 인정' 신청을 해 주십시오.
재택개호 지원사업자, 개호보험시설, 지역포괄 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신청시 필요한 것

- 개호보험 요개호인정 · 요지원인정 신청서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40세부터 64세까지는 건강보험증(의료보험 피보험자증)의 사본도 필요합니다.

2 심신 상태 등을 조사 (인정조사)

오사카시에서 위탁을 받은 인정조사원이 건강상태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구청의 보건사가 함께 참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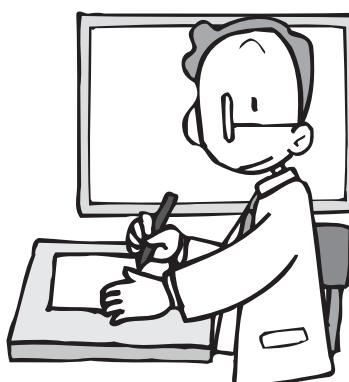
■인정조사시의 개호인제도

인정조사에 불안감을 갖거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 및 대화가 불가능한 외국인인 경우에도 안심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통역사 등이 동행하는 오사카시의 독자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주치의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주치의 소견서)

오사카시는 주치의에게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에 관한 소견서 작성률을 의뢰합니다.
※ 별도의 수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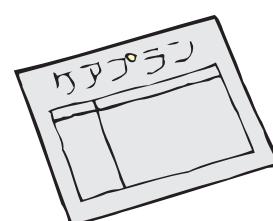
4 전문가가 심사 (개호 인정 심사회)

인정조사의 결과 및 주치의 소견서에 근거하여 보건, 의료, 복지 관련 전문가가 개호가 필요한 정도(요개호 상태 구분 등)를 심사 및 판정합니다.



6 케어플랜 작성

케어매니저 등과 어떠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싶은지 상담해 주십시오. 케어매니저가 인정 결과에 따라 케어플랜을 작성해 줍니다.



※ 인정을 받기 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인정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액 등을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결과 전에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케어매니저 등과 상의하십시오.

8 갱신 수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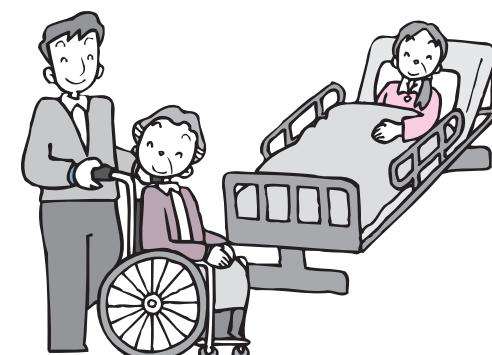
요개호 인정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갱신은 12개월)입니다. 단, 건강 상태에 따라 24개월까지 연장, 3개월까지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태의 구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 이용

케어플랜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용의 10% 또는 20%는 이용자의 부담이 됩니다.
①에서 ⑥까지의 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에서 인정된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⑧의 갱신 수속을 해 주십시오.



5 인정 결과 통지

■인정 결과 통지

개호 인정 심사회의 심사판정 결과에 의거하여 오사카시가 요개호 · 요지원 인정을 처리한 후,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요개호 상태 구분 등

요개호5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
요개호4	
요개호3	
요개호2	
요개호1	
요지원2	개호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
요지원1	
비해당(자립)	개호예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분